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 : 베트남 중궛(Dung Quat) 도시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
- 나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30일간 (2019. 12. 16. 한)
- 다. 사업예산 : 금500백만원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베트남의 중부 경제중심지역의 전략적 위치에 입지하는 Quang Ngai성의 중궛 경제구역(Dung Quat Economic Zone)은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투자 우선 지역이며, 철도, 항구, 항공 등 입체적인 인프라망 구축의 중심 지역임
- 본 사업은 중궛 경제구역 내 주택, 병원, 학교, 공원 등을 망라한 119ha 지역의 도시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주는 현지 합작사와 함께 중궛 경제구역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득하고('19.3)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고자 함
-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개발 방향,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 수출에 기여하고 당사국 정부 정책 및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예비 사업권을 기 획득한 제안형 투자개발사업으로, '19년 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권을 획득하고 '20년 2분기부터 단계적 착공을 예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주 확정을 위해서는 세부사업계획의 적기 제출이 필수적인바,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업검토가 필요
- 정상적으로 "협상에 의한 계약"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